

계룡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계 룡 시 장

계룡시 예규 제 178 호

계룡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2호, 제5호, 제8호에 따른 낚시인,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터업자는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발표한 경우,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명조끼 착용) 낚시인은 낚시터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인 준수사항) 낚시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낚시터 및 낚시터관리선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3.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4. 낚시터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또는 소각하는 행위
5.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6. 낚시터 영업시간 종료 후의 낚시터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
7. 낚시터 허가구역 밖에서 낚시행위
8. 다른 낚시인의 낚시행위에 방해하거나 음주·가무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구명조끼 착용 등 그 밖의 낚시터 안전관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제7조(낚시인 준수사항 게시 등) 낚시터업자는 지침 제6조 낚시인 준수사항의 별표 1을 포함한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게시문을 낚시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발생의 보고) 낚시터업자는 낚시인에게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게시방법(안 제7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또는 종이(코팅시)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은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 하되, 글씨의 크기는 20P 이상으로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남시터의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남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남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 2.
- 3.

낙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낙시인 안전관리 지침” 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낙시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낙시터 및 낙시터관리선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낙시도구나 미끼를 낙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낙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4. 낙시터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또는 소각하는 행위
5. 「수산자원관리법」 에서 규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6. 낙시터 영업시간 종료 후의 낙시터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
7. 낙시터 허가구역 밖에서 낙시행위
8. 다른 낙시인의 낙시행위에 방해하거나 음주·가무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구명조끼 착용 등 그 밖의 낙시터 안전관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 룡 시 장

계룡시 고시 제2021-114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계 룡 시 장

- 1. 고 시 일 : 2021. 11. 12.
- 2. 변경내용 : 도로구간 변경
-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조서 및 도면)
- 4. 도로구간 등 변경 절차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봉사과(☎042-840-2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2. 도로구간 변경 도면 1부. 끝.

□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광석향한1길)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유사 도로명 동일 도로명	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시작	끝			
변경 전	광 석 향 한 1 길	엄사면 광석리 423-4	엄사면 광석리 408-1	도면 참조	234	3	20	1	24	-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변경 후	광 석 향 한 1 길	엄사면 광석리 431-5	엄사면 광석리 408-1	도면 참조	225	3	20	1	24			

현 황 도 면



☐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광석향한2길)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유사 도로명 동일 도로명	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시작	끝			
변경 전	광 석 향 한 2 길	엄사면 광석리 259-3	엄사면 광석리 산21	도면 참조	857	3	20	1	86	-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변경 후	광 석 향 한 2 길	엄사면 광석리 259-11	엄사면 광석리 305-1	도면 참조	864	3	20	1	86			

현 황 도 면



계룡시 고시 제2021-115호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계 룡 시 장

- 1. 고 시 일 : 2021. 11. 15.
- 2.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1개 구간/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봉사과(☎042-840-2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조서 1부.
 - 2.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도면 1부. 끝.

붙임1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조서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조서												
연 번	시작 지점	끝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기 초 간 격 (m)	기초번호		도 로 위 계	도로명	부여사유	유사도로명
							시작	끝				
1	엄사면 광석리 408-24	엄사면 광석리 408-22	노선도 참조	268	4	20	24-1	24-28	길	광석향한길	법정리명인 광석리에서 향한리로 연결되는 도로임을 반영	-

붙임2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설정 도면



계룡시 고시 제2021-11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석계리 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수송대대 대형세차장 신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22.

계 룡 시 장

- 1. 사업 시행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2 외 1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수송대대 대형세차장 신축
- 3. 사업 개요: 실시계획인가 면적 1,070.17㎡

시설명	용도	세부시설	실시계획 인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비고
공공 청사	국방,군사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1,070.17	180.10	180.10	16.83	16.83	

-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호 충청시설단
 - 성명: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장)
- 5.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면·동·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2	잡	128,394.00	187.29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2			105-4	잡	2,243.00	882.88			
합 계					130,637.00	1,070.17			

계룡시 고시 제2021-120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계 룡 시 장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사유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34	계룡시 엄사면 양정향한길 118	2021.11.18.	2009.05.27.	양정고개에서 향한리로 진입하는 도로임을 반영
계룡시 금암동 174-1	계룡시 장안1길 12-1 (금암동)	2021.11.18.	2009.05.27.	장안로에서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변경(직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계룡시 엄사면 광석향한길 1-14	계룡시 엄사면 광석향한길 14	2021.11.18.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직권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 또는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계룡시 공고 제 2021-759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2. 개정이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등 사무위임 조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현행화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2) 민원분야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신설

1.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민원분야	9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0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민원분야	4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1. 17.(수) ~ 12. 7.(화), 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2월 7일 까지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계룡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 서면, 팩스 등

우편) 32823,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전화) 042-840-2122 / 팩스) 042-840-2112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룡시 자치행정과 서무팀(☎042-840-2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계룡시 조례 제 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면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1.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민원분야	9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0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민원분야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민 원 분 야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민 원 분 야	1	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9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0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